



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

# 특수형태근로종사자



##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?

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상시적으로 한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아 생활하되,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고용하지 않아 「근로기준법」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



###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?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



## 콘크리트 피니셔

콘크리트 표면을 평탄하고 균일하게 다듬는 기계로 1차 스크리드, 바이브레이터, 피니싱 스크리드 등의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원동기를 설치한 건설기계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[별표1]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



## 콘크리트 피니셔 작업 특성



- 스크리드가 콘크리트를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고, 바이브레이터가 진동과 압력을 가해 콘크리트의 공극을 제거하여 다짐 효과를 높인 뒤, 피니싱 스크리드가 표면을 절삭하여 평탄한 포장면을 완성
- 콘크리트를 포설할 수 있는 표준너비(mm)로 규격을 표시하고 신장가능한 경우는 최소, 최대너비로 표시

### ※ 주요 구조 및 기능



#### 스크레더

공급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 균등하게 깔아주는 기능



#### 바이브레이터

유압장치를 통해 콘크리트에 진동과 압력을 가해 다지는 기능



#### 스크리드

콘크리트를 일정하게 펴서 고르는 1차 스크리드와 날카로운 칼날을 이용해 평탄하게 절삭해 포장작업을 마무리 하는 피니싱 스크리드로 구성



#### 각종 센서

설계된 공정에 맞게 작업량을 결정하여 작업의 진료를 유도



## 콘크리트 피니셔의 종류



### Form paver (FP Type)

미리 설치된 금속 거푸집을 따라 이동하고, 거푸집 안에 콘크리트를 공급한 후 콘크리트 표면을 평평하게 다지며 진동기를 통해 기공 제거 및 압력을 주면서 평탄 마감하는 방식



### Slipform paver (SP Type)

피니셔 앞에 콘크리트를 일정하게 공급하고 진행하면서 피니셔에 직조, 기진, 평탄 마감하는 방식



### Belt paver/Spreader (PS Type)

콘크리트를 호퍼에 공급하면 컨베이어에 의해 피니셔 앞에 운송되고 피니셔가 진행하면 직조, 기진, 평탄 마감하는 방식



## 필수 안전보건교육



### 노무제공 시 교육 (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)

- 대상** • 최초 노무를 제공하는,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 운전원 (특수형태근로종사자)
- 방법** • 작업 배치 전, 집체교육, 현장교육, 인터넷 원격교육 등 실시  
※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
- 시간** • 2시간 이상(단기간 작업\* 또는 간헐적 작업\*\*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)  
\*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, \*\*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
- 면제** • **교육시간 1/2 면제** 해당 건설기계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한 경우  
• **전체면제**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
- 내용** •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
•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
•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
•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등  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4, 5]



### 특별안전보건교육 (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)

- 대상** •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 작업  
•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작업  
• 이동식크레인 또는 타워크레인 사용작업 등
- 방법** • 작업 배치 전
- 시간** • 16시간 이상(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,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)  
• 2시간 이상(단기간 작업\* 또는 간헐적 작업\*\*인 경우)  
\*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, \*\*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
- 면제** • **교육시간 1/2 면제** 건설업에 6개월 이상 종사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
• **전체면제**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
- 내용** • 공통사항 및 각 건설기계의 사업장 내 작업 시 안전관리 사항으로 분류  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4, 5]

## ※ 건설기계 관련 주요 법령 및 기술기준

- 산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~ 제40조, 제86조, 제89조, 제91조 ~ 제93조, 제98조, 제99조, 제196조 ~ 제206조
- 공단 기술지원규정(KOSHA GUIDE) C-48-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